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배현진・이 용・김기현

이종배 • 유상범 • 임이자

김성원 · 엄태영 · 홍준표

최형두 · 조수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소유자들이 증가된 세부 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3조).

또한,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

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를 "9억원에"로,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으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70"을 "8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

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세율 및 세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	
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자(이하"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	
액]에서 <u>6억원을 공제한 금액</u>	<u>9억원에</u> <u>80</u>
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l
<u> 여건 등을 고려하여</u> 100분의 <u>6</u>	
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u>정시장가액비율</u> 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	
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5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	

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 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 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 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 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00	
<u>80</u>	
•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 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 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연 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 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 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 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 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 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 제13조(과세표준) ① ------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 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 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 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 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 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80

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	
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u>부동산</u>	<u>100</u> 분의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	
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2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	
액에 <u>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u>	<u>100분의 80</u>
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	
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공정시장가액비율</u>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